

# 2023 모든예술31(경기예술활동지원) “화성” 공고

모든예술31(경기예술활동지원사업)은 경기문화재단과의 매칭사업으로 경기도 내 예술인(단체)의 활동이력이 있는 우수예술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화성시에서 예술활동을 수행하고 경기도 예술인(단체) 여러분의 우수예술작품의 유통, 장려를 위한 사업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의 긴 지속으로 모든 예술 활동이 위축되고 그 어느 때 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경기도 예술인 여러분에게 이번 지원사업이 작은 버팀목이자 응원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23. 2. 20.

(재)화성시문화재단 대표이사

## 1 추진근거

- 「화성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 「화성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3조의 2
- 「화성시 시민중심 문화자치 지원조례」 제7조, 제9조
- 「화성문화예술창작 육성 활성화사업 지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 「문화예술창작·육성 활성화 사업 지원금 운영규칙」
-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진흥지원금운영규칙」
- 「2023년 경기예술활동지원 기초문화재단 협력 지원사업 운영지침」

## 2 공모개요

- 사업명: 2023 모든예술31(경기예술활동지원사업) “화성”
- 공모일정
  - 공고기간: 2023. 2. 20.(월)~3. 12.(일) (21일간) \*공고일: 2023. 2. 20.(월)
  - 접수기간: 2023. 3. 13.(월)~3. 19.(일) (7일간)
  - 영상심의: 2023. 4. 13.(목)~4. 14.(금)
  - 최종발표: 2023. 4. 21.(금) 화성시문화재단 홈페이지 공고
- 지원대상: 공고일 이전 경기도 거주(소재) 예술인(단체)
- 지원장르: 공연예술, 시각예술, 문학부문
- 지원내용: 활동이력이 있는 우수예술작품의 공연, 시각, 문학 지원
- 지원규모: 최소 4,000천원~ 최대 16,000천원 / 총 182,000천원 지원(목표: 20건)

## 3 공모계획

- 지원개요
  - 활동 이력이 있는 우수예술작품의 공연, 시각, 문학 부문 지원

구분	예술분야	지원내용	지원규모		
				최대	최저
총 지원금 계			182,000천원		
모든예술31 <경기예술 활동지원>	공연예술	공연예술활동(기존 레퍼토리, 음악, 무용 등) 지원 * 기존에 공연 이력이 있는 재연 작품 * 기존 활동내용을 영상으로 확인 가능한 작품이어야 함	개인	8,000천원	4,000천원
			단체	16,000천원	8,000천원
	시각예술 (미디어아트포함)	기존작품 전시/출간/상영 지원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영상 등) * 단순 교육프로그램 지원 불가 * 기존 제작된 작품집(프로젝트) 전시	개인	6,000천원	4,000천원
			단체	10,000천원	6,000천원
	문학분야	작품 북토크 및 북콘서트 등 출간회 지원(시낭송, 시극 발표 등) * 단순 교육프로그램 지원 불가 * 기존에 본인이 출간(발표)한 작품	개인	5,000천원	4,000천원
			단체	7,000천원	5,000천원

- \* 사업 계획 및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신청금액은 조정될 수 있으며, 차등지원할 수 있음.
- \* 화성예술활동지원사업과 중복신청가능하나 1사업 선정을 원칙으로 함.
- \* 다른 프로젝트라도 1명의 신청자(단체)는 예술분야(공연/시각/문학) 중 1가지만 신청 가능.
- \* 기존 모든예술31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의 경우 동일사업으로는 최대 2년으로 지원 제한.

### <서남부권 예술활동 지원할당제> 운영

- ◆ <서남부권 지원할당제>: 전체 선정작 중 10%는 화성시 서·남부권에서 수행되는 예술활동을 선정하는 제도로, 경합 및 최종 심의결과에 반영
- \* 서·남부권(송산, 서신, 마도, 비봉, 매송, 필탄, 장안, 양감면, 남양, 우정, 향남읍/새솔동) 활동으로 체크하여 신청한 경우 최종 선정 후 예술활동은 반드시 화성시 서·남부권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 ○ 지원자격

- ① 경기도 거주(소재)자
  - \* 공고일 이전 기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또는 ‘단체’의 경우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상
- ② 아래에서 지정하는 예술인/단체

구 분	내 용
예술인	- 해당분야 전공자(대학 졸업예정자 이상) - 만19세 이상의 「예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2 예술활동에 관한 세부 기준의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문화관광체육부 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인패스의 발급이 완료된 자
예술단체	-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의한 예술법인 및 단체 - 지정 전문예술법인·단체 -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 등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단체 내 전문예술인의 구성비율이 50% 이상인 단체
비전문예술단체	해당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예술 단체 또는 동호회 등

※ 위 세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

※ 항목 ① 과 ② 모두 만족하며, 지원불가 대상 및 지원불가 사업에 미해당 하는 자

○ 거주지 확인 기준 서류

신청구분	확인서류
개인	주민등록초본(최근 1개월 이내)
단체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 홈텍스:사업자등록증사실증명원(고유번호증도 동일) 발급 후 제출 (최근 1개월 이내))

※ 단체의 대표자 혹은 단원의 주소지 인정 불가

※ 선정 후 주소지 확인 시 공고일 이전 경기도 거주 확인불가 시 선정취소

○ 지원방법

- 제출서류 모두 구비하여 접수기간 내 전자우편 접수(artsupport@hcf.or.kr)
- 현장접수 지원: 고령자(만 65세 이상)에 한해 현장접수 지원(3/14~3/15)  
※ 현장접수의 경우 5일 전 사전 연락 필수

○ 신청 불가 대상

- 지원 대상자가 고용 등을 통해 화성시의 기금 또는 출연금으로 ‘인건비’ 를 지급 받고 있거나 그러한 지원을 받는 단체
- 경기도 거주(소재)자가 아닌 개인 또는 단체 (\* 공고일 이전 기준)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학교, 종교기관, 친교기관 및 이들 기관의 소속 또는 운영 단체

- 지원금을 지원받고도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관련법령 규정을 위반한 개인 및 단체
- 정산서 미제출 개인, 단체이거나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고도 반납하지 않은 개인, 단체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해 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  
⇒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1항 15호 “영리의 목적으로 청소년기본법제3조제3호의 청소년활동의 기획 주관 운영을 하는 사업장(이하 청소년활동기획업소)” 에 해당하는 예술단체 선정시, 선정 후 성범죄 경력조회회 신서 제출에 관한 증빙 요청(필수절차)

○ 신청 불가 사업

- 국고 및 지자체, 공공기관 및 단체의 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업(화성시청, 화성시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타 기초문화재단 등)
- 정치적, 종교적, 상업적 목적의 사업 (\*목적한 바 아니더라도, 정치·종교·상업적 색채가 짙은 프로그램은 지원불가)
- 학교·종교·시민단체의 행사성 사업
-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
- 지역축제 등의 그 부속 행사로 계획된 사업
-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 시설의 건립과 매입, 재건축, 기금적립 및 용자 지원 사업
- 기금 적립과 용자 지원 사업
- 지원금을 통한 재교부 사업

○ 중복신청 및 선정

- 당해연도 동일·유사한 사업으로 (타 기관 지원 사업 포함) 복수의 지원사업 선정 불가
- 다른 사업이더라도, 동일한 예술인(또는 단체)은 (재)화성시문화재단의 예술창작활동 지원
- 사업인 ‘화성예술활동지원사업, ‘예술창작 협업지원’ 사업 간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중복 선정은 불가 \*예술인지원팀 및 예술교육지원팀의 지원사업과는 관련 없음.

○ 지원자 신뢰 신청제도 운영

**「지원자 신뢰 신청제」 운영**

지원신청 시 전문예술인·단체 여부, 활동경력과 신청자격 등에 대하여 신청 주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지원자 신뢰 신청제」 운영. 화성시문화재단은 지원 신청자의 판단과 선택을 존중하고 신뢰하며 별도의 조정 없이 심의를 진행함. 부정확한 정보, 제출 자료 등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청 주체인 예술인·단체 여러분은 공고 내용을 숙지하신 후 책임감 있게 지원사업을 신청해야 함.

**4 접수방법**

- 전자우편으로 제출서류 및 자료 발송(artsupport@hcf.or.kr)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 포트폴리오 1부 \*영상자료 있는 경우 포트폴리오 내 링크로 첨부
  - 주민등록초본 또는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 현장 접수 지원: 고령자(만65세 이상)에 한해 현장접수 지원(3/14~3/15)
  - 5일 전까지 사전 유선 연락 필수

**- 파일명 설정 안내 -**

**■ 메일 제목 및 파일명**

- 모든예술31\_공연/시각/문학\_지원자명(단체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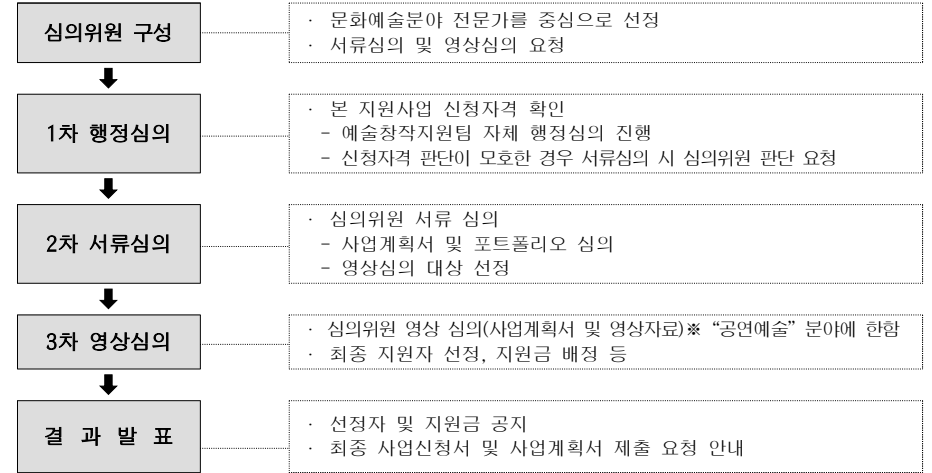
- ※ PDF 파일(1장에 1면보기)로 제출 권장
- ※ 접수여부는 개별 전자우편을 통해 개별 회신 예정
- ※ 별도의 신청서(양식)로 제출시 심의에서 제외됨

**5 심의 및 평가**

- 심의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구성
  - 세부 장르별 외부 전문 심의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구성

예술분야	세부분야	심의 평가위원	비고
공연예술	공연예술활동 (공연,연극,음악,무용,다원 등)	3명	공연/시각/문학 분야별 전문가 3명으로 심의위원회 구성
시각예술	회화,조각,공예,사진,영상,설치 등	3명	
문학	작품 북토크 및 북콘서트 등 출간회	3명	

○ 심의절차



※ 미선정자에 따른 개별 통보 없음.

※ 문학 및 시각예술 분야의 경우 2차 서류심의로 최종 선정(영상심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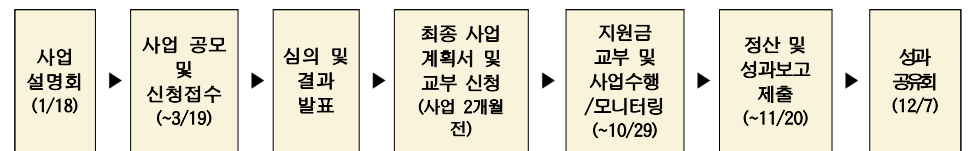
※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금 결정액이 조정될 수 있으며, 코로나19 관련 정부대응 조치에 따라 심의방식과 절차가 변경될 수 있음.

○ 사업 평가

- 지원받은 사업은 필수적으로 현장평가를 받아야 하며 관련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 정산 및 성과보고서, 결과자료 등 관련 자료를 기한(11월 20일) 내에 성실히 제출해야 합니다.
- 우수사례 선정 : 예술분야별 우수사례 선정을 통해 차년도 심의에 반영합니다.

**6 사업일정**

○ 추진절차



○ 사업추진일정

구 분	일 정
공 고 일	2023. 2. 20.(월)
공 고 기 간	2023. 2. 20.(월)~3. 12.(일) (21일간)
접 수 기 간	2023. 3. 13.(월)~3. 19.(일) (7일간)
서 류 심 의	2023. 3. 29.(수)~3. 30.(목) *서류심의 발표: 4. 4.(화) 18:00 예정
영 상 심 의	2023. 4.13.(목)~4. 14.(금)
최 종 발 표	2023. 4. 21.(금) 17:00
사 업 운 영	2023. 5. 1.(월)~10. 29.(일) 까지 완료 필수
정산서, 성과물 제출	2023. 11. 20.(월) 까지 제출 필수
간 담 회	2023. 12. 7.(목)

**7 유의사항**

- 개인의 경우 1인극, 독주, 독창, 독무 작품일 경우를 권장하며 신청자 본인이 실연자여야 합니다.
- 단체의 경우 지원금의 **5%에 해당하는 비용은 자부담 편성**이 필수입니다.
- 동일한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타문화재단, 지자체 등의 지원을 받은 사업은 지원 선정 이후라도 중복지원이 확인될 경우 지원 취소됩니다.
- 표절작품을 지원신청 하였을 경우, 지원이 결정된 후에도 지원결정이 취소되며, 해당단체·대표자 및 당사자는 향후 지원사업 신청이 불가합니다.
- 아래에서 제시하는 수익금 기준에 따른 수익금 발생을 권장하며, **발생한 수익금은 전액 해당 지원사업에 사용(사례비로 사용 가능)하거나 정산 시 반환이 원칙**입니다.
  - ※ 사업과 관련한 인건비성 사례비를 포함하는 (행사•홍보비)전반 /증빙필수
  - ※ 우수예술지원(\*인당 10,000원 이내 또는 무료 권고)
- 금년 평가결과는 차년도 모든예술31<경기예술활동지원>심의에 반영합니다.
- 홍보물 제작 관련 안내

- ▶ 각종 홍보물(현수막, 포스터, 전단, 팸플릿 등)과 인쇄물을 제작하는 경우  
**[후원 :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화성시, 화성시문화재단] 기재**
- ▶ 공연프로그램, 리플릿, 포스터, 도록 등 인쇄물
  - (화성시, 화성시문화재단과 경기도, 경기문화재단의 모든예술31(경기예술활동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 서적, 음반 등 인쇄물 : ‘이 책임받은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화성시, 화성시문화재단의 2023년도 모든예술31(경기예술활동지원사업)을 지원받아 발간제작되었습니다’ 의 문구 명시
- ▶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화성시, 화성시문화재단 로고 : 각 기관 홈페이지 C내려받기
- ▶ ‘공연’ 운영하는 경우 관객 초청 외에 사전 **일반관객 모집(온라인 접수 또는 유선 접수) 병행 필수**
- ▶ 동탄복합문화센터 등 오프라인 홍보물 게시 협조 요청 시 게재 도와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최종 선정자 오리엔테이션에서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8 문의**

- 화성시문화재단 예술창작지원팀 031-290-4673
- 문의시간: 평일 10시~17시(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 붙임 1. 공연예술 지원신청서식(지원신청서, 포트폴리오) 1부.
2. 시각예술 지원신청서식(지원신청서, 포트폴리오) 1부.
3. 문학부문 지원신청서식(지원신청서, 포트폴리오) 1부.
4. 2023 모든예술31(경기예술활동지원) 지원안내 책자 1부.
5. 2023 모든예술31(경기예술활동지원) FAQ 1부. 끝 .